

#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정책의 주요내용

개정 : 2025.10.31

주식회사 케이원자산운용(이하 '당사')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(이하 '자본시장법')」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,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로 인한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당사 정책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.

## 1. 당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.

- 1) 자본시장법 제 174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
- 2)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- 3)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
## 2. 당사는 다음 각호의 정보에 대해 정보교류차단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.

- 1) 투자자가 보유한 「주식 ·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2)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3)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

- 4)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32 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, 제 33 조의 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 신용정보
- 5) 당사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정보
- 6)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

### 3. 당사 정보교류차단 부문 및 정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.

---

정보교류차단 부문	차단 정보
○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	○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○ 투자일임재산 운용	○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련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○ 고유재산 운용	○ 자본시장법 제 174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
○ 집합투자재산운용	

---

### 4. 당사가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,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,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제한 상품목록으로 지정합니다.

- 1)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투자 예정 또는 투자 중인  
주식(주식관련사채 포함) 및 기타 금융투자상품
- 2) 그 외 준법감시인이 지정한 미공개 정보

5. 당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되는 거래의 유형 및 대응방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
---

거래 유형	대응 방안
○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 간 자산구성 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교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상품에 대해 거래제한 목록지정</li><li>○ 거래제한 목록에 대하여는 임직원 자기매매 제한 등 조치</li><li>○ 거래제한 상품 거래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절차 마련</li><li>○ 관련 행위 조사 후 대응 후속조치 시행</li></ul>
○ 미공표 조사분석 자료를 이용한 고객자산 또는 고유자산 매매거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이해상충 인지 즉시 해당 상품에 대한 거래제한 목록지정</li><li>○ 거래제한 목록에 대하여는 임직원 자기매매 제한 등 조치</li><li>○ 관련 행위 조사 후 대응 후속조치 시행</li></ul>

---

6. 당사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기본정책으로 관리하여 이해상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

- 1)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 규정
- 2) 정보교류 차단 부문 설정
- 3)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장치 운영
- 4) 정보교류 차단 조직 설치 운영
- 5) 이해상충 우려 거래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

- 6) 임직원에 대한 주기적인 내부통제 교육 실시
- 7) 홈페이지에 정보교류차단 정책 공개
- 8) 이해상충 및 정보교류 적정성 여부의 주기적인 점검 실시

## 7. 정보교류 담당 조직 및 담당임원 등

- 1)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: 리스크&컴플라이언스팀
- 2)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: 준법감시인
- 3)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: 각 담당부문의 업무총괄 책임자